

울산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126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김석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재

변 론 종 결 2020. 10. 6.

판 결 선 고 2020.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 5. 17. 접수 제695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울산지방법원 2018. 5. 17. 접수 제695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고 조상의 제사를 충실하게 모실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를 장기간 봉양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등).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모두 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고 또는 원고의 자녀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들로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증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별지